

# 보도자료



#### 12.1(목) 15:15부터 보도 가능

작성부서	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, 금융감독원 복합금융감독국, 한국거래소 파생상품개발총괄팀.증권상품총괄팀,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기획부							
책 임 자	김학수 과장 (2156-9870) 박흥찬 국장 (3145-8340) 최중성 부장 (3774-9360) 임재준 부장 (051-662-2780) 성인모 부장 (2003-9370)	담 당 자	최상아 사무관 (2156-9872) 현정근 부국장 (3145-8350) 최계명 팀 장 (3145-8325) 김 영 팀 장 (3774-9363) 류승규 팀 장 (051-662-2791) 이창화 팀 장 (2003-9371)					
배 포 일	2011. 12. 1(목)	배포부서	정책홍보팀(2156-9542~48) 총 13매					

## 제 목 : 장내옵션시장, ELW시장 및 FX<u>마진시장 건전화방안</u>

#### 1. 그간 제도개선 경과

- □ 그간 금융위, 금감원, 거래소, 금투협회는 우리 **파생상품시장의 과도한 투기성, 높은 개인투자자 비중**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음
  - ① 장내 파생상품시장의 경우, '10.11.11. 옵션만기일 시장충격의 재발 방지를 위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.시행('11.1.11)
    - \* 사후증거금제도 개선, 미결제약정수량 제한제도 개선, 대량보유보고제도 도입 등
  - ② ELW 시장에서 개인투자자의 무분별한 투자를 억제하고 스캘퍼에 대한 부당한 특혜가 없도록 조치('10.11.1, '11.5.20)
    - \* 1차: 교육이수 의무화, LP평가 강화, 2차: 기본예탁금부과, 주문속도 관련 기준 마련 등
  - ③ FX마진 시장에서 개인투자자 손실을 축소하기 위해 증거금 률을 상향하고 투자권유 등에 대한 감독 강화('09.7.17)
    - \* 증거금률 상향(2%-5%), 복수 FDM제도 도입, 금감원 검사.미스테리쇼핑 등 실시 등

#### 2. 추진 배경

- ① (장내 옵션시장) 과도한 시장규모로 인해 **전체 시장리스크를** 확대할 우려가 있으며 **개인투자자의 투기거래 지속**
- ② (ELW 시장) 독점적인 공급자인 LP가 적극적으로 매매에 참여하는 시장구조가 투자자에게 불공정한 측면
- ③ (FX마진 시장) 과도한 레버리지로 인해 **손실가능성이 높으며 투자자의 리스크에 대한 인식이 미흡**
- □ **(장내 옵션시장)** 거래량 기준 세계 1위('10년 35억계약)로, 현물 시장(시가총액 기준 세계 17위)에 비해 규모가 과도하다는 평가
  - ① '11.8월 시장불안이 촉발된 이후 주요 상품의 거래량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파생시장이 현물시장을 흔드는 소위 '왝더독' 현상 심화 우려
    - 특히, 주가 하락에 대한 기대로 **풋옵션 매매가 2.4배, 평균가격이** 11배 이상 급등하는 등, 투기성이 부각
  - ② 한편, 개인투자자 대부분이 파생상품에 대한 충분한 사전지식 없이 시장에 참여\*하며, 투기적인 거래로 손실 시현
    - \* 개인투자자는 정보 및 투자전략, 자금력 등 기관.외국인에 비해 열위에 있어 상품구조가 복잡한 옵션 거래에서 손실 확률이 매우 높음
    - 특히, 증시 하락기에는 극단적인 고수익을 기대하는 개인 투자자의 풋옵션 매수가 급증하는 경향

< 개인투자자 풋옵션 매수 추이 >

								(딘	<u>  위 : %</u>	<u>. 억원)</u>
구분	07상	07하	08상	1호80	09상	09하	10상	10하	11상	11하
지수등락률	21.55	8.81	-11.71	-32.86	23.62	21.06	0.92	20.77	2.42	-9.12
순매수금액	748	-94	-69	4,538	-2,093	-2,746	-363	-1,847	-2,062	8,608

- □ (ELW시장) 1,2차 건전화 방안\*을 통해 일반투자자의 과도한 시장 참여는 축소\*\*하였으나, 시장구조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필요
  - \* 개인투자자의 신중한 투자참여 유도를 위해 별도 거래신청서 작성 및 ELW 교육이수 의무화, 기본예탁금제도 등 도입
  - \*\* 개인 활동계좌 수 : ('11.1) 47,326 ('11.4) 46,831 ('11.10) 27,814
  - ① LP(Liquidity Provider, 유동성 공급자)가 독점적 공급자로서 **적극적 호가제시를 통해 가격형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는 지적**
  - ※ 현재 LP는 유동성이 낮은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여 상장을 유지하는 LP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기보다는 ELW의 매매를 통한 증권사 이윤추구에 치중하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 제기
    - 대부분\*의 ELW거래가 LP와 투자자간에 이루어지고 있어 LP의 호가제시 및 빈도에 따라 시장이 크게 영향
  - \* 종목별, 기긴별 편차가 있으나 '11.10월 기준으로 LP를 제외한 투자자간 거래 비중은 전체 거래량의 11.2%, 거래대금의 9.9% 수준
  - ② **발행조건**(만기, 기초자산, 전환비율 등)**이 서로 다른 ELW가** 8,500종목 이상 상장되어 있는 상황에서,
    - 매수종목 선택시 유동성을 크게 고려하는 일반투자자들의 경우 스캘퍼 매매가 활발한 종목 중심으로 투자에 참여하는 등 비합리적 투자\*로 이어질 가능성
    - \* 스캘퍼들은 개인 거래량의 81.2%를 차지하고 있으나 ELW에 대한 독립적인 가치평가(valuation) 없이 LP의 호가 알고리즘을 미리 예측하여 매매에 참여

- □ (FX마진 시장) 과도한 레버리지 및 시장 불투명성 등으로 인해 개인투자자 대부분이 손실을 보고 있어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
  - ① 개인투자자가 외화-외화간 통화변동성에 대한 충분한 정보 및 이해 없이 단타매매 위주로 투자하고 있으며,
    - 낮은 증거금(높은 레버리지)으로 인해 **1~2%만 소폭 변동하더라도 강제청산\*** 되어 **투자자 손실이 '10년 589억원 수준**
    - \* 전체 계좌의 51.5%가 유지증거금(계약당 3,000\$) 미달로 강제청산
  - ② 증권.선물사는 FX마진거래가 가진 높은 위험성을 투자자 에게 충분히 고지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
    - 기존 FX마진 투자자의 대다수가 손실을 보고 있으며, 구체적인 손익구조 등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투자하는 사례도 있음
  - ③ 증권.선물사 신규 진입에 따라 고가의 경품 수익률 대회 개최 등을 통해 신규 투자자 유치 경쟁
  - ◆ 이에 금융위.금감원.거래소.금투협회는 장내파생시장의 양적 성장에 걸맞는 질적 성장을 유도하고 ELW 및 FX마진 거래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,
    - 각 시장의 현황과 문제점을 점검하고, 개별 시장의 특성에 적합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였음

- 2. 주요 개선 방안
  - 1 KOSPI200 옵션 시장 등 장내파생시장
  - ◆ 투기성 높은 옵션시장의 거래규모를 적정화하고 개인들의 신중한 투자참여를 유도하여 파생시장의 안정성, 건전성 제고
- ① KOSPI200옵션 1계약 거래승수 상향 조정
- o (현황) KOSPI200선물의 1계약 금액은 주가지수×50만(거래승수)이나, KOSPI200옵션의 1계약 금액은 프리미엄×10만(거래승수)
- (개선) **옵션의 거래승수를** 선물과 동일\*하게 **50만으로 상향**하여 시장 규모를 축소\*\*하고 개인의 소액 시장참가 제한
  - \* 해외의 경우 동일한 기초자산의 선물,옵션의 거래승수가 같은 것이 일반적
  - \*\* 5계약 미만 거래는 거래량 기준으로는 전체에서 7.8% 정도에 불과하나 거래건 기준으로는 전체 거래건의 65.7%와 개인거래건의 76.8%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
- (기대효과) 옵션시장의 거래량 및 거래대금이 동시에 감소하여
   파생시장의 리스크 감소 및 투기적 거래 감소 기대
  - 거래단위 상향시 소액으로 1계약씩 빈번히 매매하는 개인투자자가 시장에서 이탈하여 **전체 거래대금도 감소할 것으로 보이며**,
  - 이 경우 개인의 투기적인 거래로 인해 시장에 참여하였던 기관. 외국인의 거래도 함께 감소하여 시장이 상당부분 축소될 가능성
  - 이를 통해 KOSPI200옵션시장에 집중된 유동성을 타 시장으로 분산시켜 **파생시장이 현물시장에 주는 충격을 완화** 
    - \* 거래규모가 큰 기관투자자 등의 경우 승수 인상으로 인한 시스템 변경 이외에 거래단위 상승으로 인한 헤지전략 수행애로 등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

#### ② 개인투자자 현금예탁비율 상향 조정

- (현황) 개인투자자 등 사전위탁증거금 적용 대상자는 선물거래시 사전위탁증거금\*의 3분의 1 이상을 현금으로 예탁할 의무
  - \* 적격기관투자자는 장종료시점에 보유하고있는 미결제약정에 대해 위탁 증거금을 납부하나, 일반투자자의 경우 결제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주문시 마다 증거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음
- o (개선) 선물거래시 현금예탁비율을 2분의 1 이상으로 상향
- (기대효과) 개인투자자의 파생거래에 따른 결제안정성을 제고
- ③ 개인투자자 모의 파생거래시스템 제공 및 교육 실시
- o (현황) 증권.선물사가 일반투자자에게 모의거래시스템을 제공 하고 있으나 신규투자 유인 및 마케팅목적에 치중
- o (개선) 일반투자자가 거래 전에 모의실전투자를 통해 충분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**협회.거래소가 모의거래시스템을 제공** 
  - \* 투자자는 모의거래시스템을 이용하여 실시간 시세를 보고, 모의실전투자를 하고, 가상의 손익 및 증거금 등을 산출 가능
  - 일반투자자에게 **파생상품거래의 위험성**, **위험관리의 중요성 및 위험관리 실패사례** 등을 온/오프라인 교육
- (기대효과) 개인투자자의 신중한 투자참여를 유도하고 충분한 사전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 마련

## 2 | ELW 시장

- ◆ 유동성공급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LP가 유동성을 공급하 도록 하여 불공정성 문제를 해소하고, 상장심사를 강화하여 우량종목 중심의 상장 유도
- ① 유동성공급목적 이외에 LP의 호가 제출 제한
- (현황) LP는 시장스프레드비율이 신고비율(통상 20%)을 **초과할 경우** 에만 호가제출의무가 발생하나.
  - LP들이 **호가제출의무 이상으로 호가를 상시 제출**하면서 **시장 가격을 원하는 방향으로 유도**한다는 지적
  - \* 의무 수준 : ① 5분 이내 ② 20% 이내 ③ 양방향으로 ④ 100증권 이상 실제 이행수준 : ① 항상 ② 7~9% 이내에서 ③ 양방향으로 ④ 8만증권 이상
- (개선) 시장스프레드 비율이 **일정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만** LP가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출\*하도록 제한
  - \* 유동성공급호가는 시장스프레드 비율이 15%를 초과하는 경우 8%~ 15%로만 제출 가능
  - 다만, LP호가 부재로 인한 시세조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LP의 양방향 호가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최우선매도 호가 미만의 매도호가 제시는 허용
- (기대효과) LP들이 **임의적인 호가를 제출하는 것이 불가능**해짐에 따라 **시세의 공정성이 제고**되고 LP 본연의 기능이 강화
  - 한편, 스캘퍼들이 LP호가를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얻기 어려워 집에 따라 스캘퍼 거래가 축소될 것으로 기대

#### ② ELW상장 종목수 제한

- (현황) 증권사는 월 2회 내외에서 신규상장을 신청하며 상장 요건\*을 충족하는 경우 별도의 심사 없이 신규상장 가능
  - \* 기초자산 제한, 권리행사기간(3월~3년) 제한, 극외가격 종목 발행 제한 등
- (개선) ELW의 상장심사기준을 강화
  - 개별 증권사의 발행횟수를 월 1회 이내로 제한
  - LP평가 성적 등이 낮은 증권사에 대해 상장종목수를 제한
  - **상품의 내역**(기초자산, 행사 가격, 전환비율 등)에 **상장요건을 강화** 하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상장 제한
- (기대효과) 증권사가 **상품의 성공가능성을 높히기 위해 무분별 하게 상장종목을 증가**\*시키는 것을 제한
  - \* 증권사는 만기 3개월이상의 ELW만 상장 가능하므로 행사가격이 3개월 이후의 주가와 크게 괴리되지 않도록 상장시점에서 최대한 많은 종목을 상장

#### ③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감시 강화

- (현황) ELW 시장가와 이론가간 **괴리율**, **거래의 반복성 등을 고려**하여 **이상거래를 적출**
- (개선) ELW관련 이상거래 적출기준 및 심리를 강화
- (기대효과) LP 호가가 최소화됨으로 인해 ELW 관련 불공정거래가 증가할 가능성을 사전 방지 가능

### 3 | FX마진 시장

- ◆ FX마진시장은 레버리지가 과도한 측면이 있으므로 **증거금 인상을 통해 투기성을 완화**하고,
  - 이 위험고지 강화 및 업계의 과도한 고객유치 금지 등을 통해시장의 건전성 강화
- ① 증거금 인상을 통한 거래규모의 적정화 유도
- (현황) 개시증거금은 거래 금액의 5%(5,000달러), 유지증거금 (마진콜 기준)은 3% 수준
- (개선) 10% 수준으로 인상하여 레버리지를 10배 이내로 축소

< 증거금 인상 방안 >

구 분	현 행	개 선
개시증거금	5% (5,000달러)	10% (10,000달러)
유지증거금	3% (3,000달러)	5% (5,000달러)

- 주) 미국의 개시증거금은 2~5%, 일본의 개시증거금은 4%이며, 유지증거금 규제는 별도로 없으나 개시증거금의 50% 수준
- (기대효과) 레버리지 축소로 인한 비용상승, 투자매력 감소로
   거래대금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
  - ◆ 2009년 9월 FX마진거래 위탁증거금 상향(2%→5%)시 거래대금이 큰 폭으로 감소
    - \* 다만, 증거금율 인상 후 일부 불법업체들이 낮은 증거금율을 제시 하면서 투자자를 유인한 전례가 있어 집중 단속 필요

< 증거금 인상 전후 월별 거래대금 추이 >

(단위: 억달러, 천계약)

그ㅂ	'09년						'10년					
丁 正	7월	8월	9월	10월	11월	12월	1월	2월	3월	4월	5월	6월
거래대금	583	471	271	257	283	282	269	290		345		
거 래 량	404	325	187	177	190	192	188	208	233	258	400	302

#### 2 거래 위험에 대한 고지 강화

- (현황) 투자자가 **거래위험에 대한 정확한 인식 없이 단기간의** 교육만으로 투자에 참여하는 것으로 파악
- o (개선) 손실계좌비율, 거래의 구체적인 손익구조 등을 계좌개설시 작성하는 '투자위험고지서' 등에 반영
  - 회사별·분기별 손익계좌 비율을 협회 홈페이지 등에 게시
  - ※ 美 CFTC는 투자자와 FDM의 이해상충 가능성 등을 'Risk Disclosure Statement'을 통해 투자자에게 고지하도록 의무화
- ㅇ (기대효과) 투자자의 위험인식 및 신중한 투자참여 유도

#### ③ 증권.선물사의 과도한 고객유치행위 제한

- (현황) 증권.선물사가 고가의 경품을 지급하는 수익률 대회
   등을 통해 신규 투자자의 시장참여를 유도
- (개선) 동일인 대상 연간 경품한도 관련 협회 자율규제를 강화
   하여 고가의 경품 수익률대회 개최 및 광고 등 자제
  - ※ 동 규정은 모든 파생상품에 대해 동일하게 적용
- (기대효과) 신규투자자의 FX마진시장 유입을 억제
- 4 투자자의 매수.매도포지션 동시구축 금지
- (현황) 일부 증권.선물사의 경우 매수/매도주문을 상계하지
   않고 별도로 체결(양건)하여 추가적 거래를 유발
  - \* 동일 상품의 매수-매도 포지션을 동시에 취하는 경우 가격변화시 동일 크기의 손실과 이익이 상쇄되어 투자자에게 이익이 되지 않음

- (개선) 시스템변경을 통해 자동 상계처리 되도록 변경
  - \* 미 선물협회(NFA)는 retail고객의 매수.매도 포지션 동시보유를 금지('09.11)
- ㅇ (기대효과) 양방향 포지션의 청산을 위한 추가적 거래 감소
- 5 필요시 추가대책 강구
- 우선 증거금 인상, 위험고지 강화, 과도한 마케팅 금지 등을
   통해 FX마진시장의 건전성을 강화해 나가되,
- 향후 FX마진거래 추이를 보아가며 **필요시 FX마진시장의 일반 투자자 참여를 제한할지 여부를 검토**할 예정
  - \* FX마진거래를 **장내파생상품으로 의제하는 현행 규정을 삭제**하여 일반 투자자의 투자를 제한(일반투자자는 투기목적으로 장외파생상품 투자가 금지)
  - 4 │ 파생상품시장 전반에 대한 감독.검사 강화
- ◆ 과도한 투기시장, 불공정한 시장으로 지적받고 있는 파생시장의 규율을 바로잡기 위해 **시스템 개선과 함께 감독·검사 강화**
- 〈 그간 감독 현황 〉
- □ 금감원.거래소.협회는 파생상품 시장의 건전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감독.검사 등을 실시
  - ① 금감원은 증권.선물사\*의 **일반투자자 대상 파생상품 영업** 행위 전반에 대해 기획검사 실시('11.7~8월)
    - \* 옵션.ELW.FX마진거래 비중이 높은 16개 증권.선물회사 대상

- ② 거래소는 현재 기본예탁금 부과기준\* 준수 여부에 대하여 회원사를 대상으로 **감리 중** 
  - \* 지난 5월 20일 ELW 2차 건전화방안 발표시 옵션전용계좌 및 ELW에 대해 기본예탁금 1500만원 도입
- ③ 금감원.거래소.협회는 불법 선물계좌 대여, FX마진거래 등 에 대해 분기별 정기점검 중이며. '11.10월 수시점검 실시
  - \* '10.7월 ~ '11.11월까지 총 317건의 불법 금융투자업체를 수사기관에 이첩
- □ 다만, 파생상품의 경우 투자위험이 매우 크므로 이를 **충분히** 이식한 투자자만 시장에 진입하도록 감독을 강화할 필요
- o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회사의 투자자 파악의무(know your customer rule)가 도입되었음에도 불구, 적합성 원칙, 설명의무 등이 형식적으로 수행되고 있다는 지적
- < 향후 감독.검사 강화 방안 >
- ① 기 검사.감리 결과에 대해 엄정 조치
- o 금감원은 '12.1분기 중 파생영업과 관련한 투자자보호 실태에 대한 검사결과 확인된 위규사항에 대하여 엄정한 제재조치를 부과할 예정
- 거래소는 기본예탁금 부과기준에 대한 감리 결과 기본예탁금
   관련 규정을 위반한 회원사에 대해서는 기준 개선조치할 예정

#### ② 향후 중점 감독.검사 사항

- ① 옵션.ELW.FX마진거래 계좌개설시 형식적 위험고지 등 투자권유 절차상 의무를 소홀히 하는 증권.선물사에 대하여 일제점검 실시
- ② ELW 관련 LP호가제한 의무 이행 여부, 전용선 관련 시스템 개선 실태 등을 향후 중점 점검
- ③ FX마진거래 관련 마케팅 금지, 투자자고지 강화 등 법령 준수 실태를 향후 검사.점검시 중점적으로 감독
- ④ 불법 금융투자업체에 대한 정기.수시 점검을 강화하여 제도 개선에 따른 풍선효과(비제도권으로 투자자의 이동)를 최소화

#### 4. 향후계획

□ 규정변경을 통해 추진 가능한 사항은 12월중 추진하고, 시스템 변경이 수반되는 사항은 '12년 1분기중 추진

시행시기	시행 내용
12월중	옵션거래승수 상향(거래소) ELW LP호가 및 상장종목수 제한(거래소) FX마진의 과도한 마케팅 금지(협회)
'12년 1분기	개인투자자 사전위탁증거금 상향 및 모의거래시스템 제공(협회.거래소) FX마진 증거금인상, 거래위험고지 강화, 양방향포지션보유 금지(금감원, 협회)

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<a href="http://www.fsc.go.kr">http://www.fsc.go.kr</a>, <a href="http://www.fss.or.kr">http://www.fss.or.kr</a>